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49호, 2018. 8. 14.,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02-397-7264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02-397-730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337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334

71	() ① [‡]	<u></u> 날전용	원자로	설치자	・ 발전	1용원7	나로운	영자·	연구용	원자료	로등설:	치자·	연구	용원제	아로등 .	운영기	아·호	백연료	주기사
업지	- · ģ	백연료물	실사용	-자·호	백원료	물질사	용자·	허가시	나용자	· 신고	사용자	· 업두	-대행/	다 및	방사	성폐기	물관리	시설	등건	설ㆍ원	<u> </u>
(0)	ō} "÷	원자력된	관계사약	섭자"리	한다`)가 총	리령으	로 정혀	하는 수	-량의	방사성	물질등	을 해	당 사	업소	밖의 7	장소나	외국	으로	부터	국내의
해딩	사	업소로	운반하	려는 🏻	내에는	대통령	병령으로	로 정하	는 바	에 따리	라 위원회	회에 신]고하	여야 현	한다.	〈개정	2013	. 3.	23.,	2014	4. 5.
21.	, 20	15. 1.	20.>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의 영해를 경유하려는 자(선박의 경우만 해당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75** () ①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제72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준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제72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15749호, 2018. 8. 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